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38
----------	-------

발의연월일 : 2026. 7. 30.

발 의 자 : 김우영 · 조계원 · 이해민
송재봉 · 김 윤 · 황정아
최혁진 · 한준호 · 복기왕
염태영 · 김 현 · 이훈기
이정현 · 이광희 · 안도걸
의원(15인)

제안이유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자체평가 결과를 점검하는 이원화된 평가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이원화된 평가체계는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평가를 초래하여 행정 비효율화와 피평가자인 연구현장의 평가 부담 가중 문제뿐 아니라, 평가 기준 및 결과의 일관성을 저해하여 평가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조정과 예산 배분에 효과적으로 환류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 됨.

또한 현행 성과평가는 연구목표 달성 여부 등 정량적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연구성과의 우수성, 연구개발 수행과정의 적정성 및 혁

신성 등 질적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형식적으로 이행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 예산이나 존속 여부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단이 없어, 특정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도 제기됨.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단일평가 체계로 개편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성과평가의 개념을 질적 성과 중심으로 확대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조정, 예산 편성 및 사업 간 조정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에 맞추어 특정평가 대상, 표준 성과지표 운영체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년도 예산을 조정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특정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의 정의를 정비하고, 성과평가의 개념을 연구목표 달성 여부뿐만 아니라 성과의 우수성 및 연구개발 수행과정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는 질적 성과 중심으로 확대함(안 제2조).

-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직접 평가하는 단일평가 체계로 개편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다. 중앙행정기관은 자체평가 결과 대신 사업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협조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에 맞추어 특정평가 대상 및 표준성과지표 운영체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년도 사업 예산을 조정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를 함께 정비함(안 제8조, 제12조 및 제22조).
- 마. 평가결과를 연구개발사업의 수정·보완뿐만 아니라 사업 간 조정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 결과의 정책 및 예산 환류 기능을 강화함(안 제15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업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을 “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성과지표를”을 “성과지표 등을”로, “성과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를 “성과 달성 여부와 성과의 우수성 및 연구개발 수행과정의 적정성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7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 등에”를 “제10조에 따라 연구기관에”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의 적절성 및 성과 등 평가(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보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관리·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당해 연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의 실시, 제2항에 따른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 요청, 제4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사업의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1. 시정조치 이행계획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2.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연구

개발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종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시정조치를 통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연구개발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을 “표준 성과지표의 개선”으로,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7조 및 제10조”를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로, “자체평가의”를 “평가”로, “수정·보완하는”을 “수정·보완 및 사업 간 조정”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연구개발사업이”를 “대규모 사업, 전략적 중요

성이 높은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
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를 점검할 수 있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자체평가 점검 결과”
를 “제7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 결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 중인 연구
개발사업 자체평가와 이에 따른 절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u>사업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u>	1. ----- ----- ----- ----- <u>사업을</u>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5. “성과평가”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하여 성과목표 및 <u>성과지표를 포함한 추진 계획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u>	5. ----- ----- <u>성과지표 등을</u> ----- ----- <u>성과 달성 여부와 성과의 우수성 및 연구개발 수행과정의 적정성 등을</u> ----- -----.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8. “자체평가”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이하	8. ----- ----- ----- ----- -----

“연구회”라 한다)가 제7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스스로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말한다.

9. (생략)

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4. 연구개발사업 평가계획

③ · ④ (생략)

제7조(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중간 성과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매년 당해 연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10조에
따라 연구기관에-----

---.

9.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의 적절성 및 성과 등 평가(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가 제6조제1항의 사업 전략계획과 제2항의 자체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실시되었는지 여부 및 결과의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관리·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당해 연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의 실시, 제2항에 따른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 요청, 제4항에 따른 국

계획의 수립, 제4항에 따른 자체
평가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특정평가) 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정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
로 추진하는 사업

4. (생략)

5. 제7조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

6. (생략)

② ~ ④ (생략)

<신설>

가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특정평가) ① -----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과 같음)

5. 제7조제1항-----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결
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사업
의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1. 시정조치 이행계획이 제출되
지 아니한 경우

2.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
한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개선을 위하

<신 설>

⑤ · ⑥ (생 략)

제12조(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①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
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의 결과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종료 기한
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해당 연
구개발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에 중대한 하자
가 있어 시정조치를 통한 개선
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2.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
한 결과, 연구개발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 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

제12조(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제15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9조(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등)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이후 5년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

표준 성과지표의 개선-----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평가-----
-----수정·보완 및 사업 간 조정-----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규모 사업,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의 추진과정, 제1항에 따른 관리
· 활용 계획의 추진 결과 및 연
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과학
적 · 기술적 · 경제적 ·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분석(이하 이 조
에서 “효과성 분석”이라 한다)
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
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
흡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포함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활용 계획과 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2조(성과평가정보의 공개 등)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자체평가 점검 결과, 제8조에

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이 --

③ _____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성과평가정보의 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제7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사업성과평가 결과, -----

